

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7. 26.] [기획재정부령 제926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산업관세과) 044-215-4436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(이하 “양허관세규정”이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4. 1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칙에서 “증량”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 2. 23.>

② 이 규칙에서 “증량물량”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(해당 물품이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)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.<개정 2006. 4. 25., 2008. 3. 28., 2015. 2. 23.>

제3조(증량물품등)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주무부장관의 요청)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3. 23., 2008. 3. 28.>

1. 당해물품의 품목번호·품명·규격·용도 및 대체물품
2.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
3.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
4.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
5.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
6.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·연도별·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
7.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·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

부칙 <제926호, 2022. 7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